



계절수업운영 규정

제정일	2009. 6. 1
개정일	2022. 8. 1
개정차수	6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8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계절수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개설시기) 계절수업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.
- 제 3조 (수업시간) 계절수업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정규교육과정과 동일한 시간(학점당 15시간 이상)을 수업하여야 하며, 교과목당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20. 8.10, 2022. 8. 1)
- 제 4조 (개설교과목) 계절수업의 하계방학 개설 교과목은 1학기 교육과정, 동계방학 개설 교과목은 1학기 및 2학기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양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으로 한다. (개정 2014.11. 1)
- 제 5조 (신청학점) 계절수업은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단, 현장실습은 제외한다. (개정 2020. 8.10)
- 제 6조 (폐강기준) 계절수업 폐강기준은 계획 수립 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또한, 수강인원 미달 교과목을 개설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2. 5. 1)
- 제 7조 (수강대상자) 계절수업은 본교 또는 학점인정교류를 체결한 타 대학의 재학생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8.10)
- 제 8조 (수업방법 및 평가) ① 계절수업의 수업방법은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한다. (개정 2022. 5. 1)
 ② 계절수업의 평가는 학칙 및 학사내규를 따른다.
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 시 포함되지 않는다. 다만, 졸업(수료)과 관련한 학점 및 성적에는 산입한다.
- 제 9조 (수강신청) ① 계절수업은 수업개시 3주전에 개설 교과목, 수업료, 등록기간, 수강신청 및 방법 등을 공고한다.
 ②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수강신청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11. 1, 2022. 5. 1)
 ③ 계절수업의 전공교과목은 교육과정의 상위과정 과목을 선행하여 수강할 수 없다.
 ④ 교과목이 폐강될 경우 타 개설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 ⑤ 계절수업은 기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재수강이 가능하며,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기 취득 성적은 삭제된다.
- 제10조 (수강취소 및 수업료 환불) ① 계절수업 수업개시 이전 폐강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개설 및 수강을 취소한다.
 ② 수강신청한 학생이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2의 수강취소원을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11. 1)
 ③ 폐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수강취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취소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료를 환불한다.
 1. 수업개시일 전일까지 : 수업료 전액 (개정 2011. 5. 1)

2. 수업개시일부터 총 수업일의 1/4까지 : 수업료의 3/4 (개정 2011. 5. 1)

3. 총 수업일의 1/4 다음날부터 1/2까지 : 수업료의 1/2

4. 총 수업일의 1/2 다음날부터 3/4까지 : 수업료의 1/4

5. 총 수업일의 3/4 다음날부터 : 없음

제11조 (위임사항)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8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